[별표 30의3] <개정 2010.11.10>

전자파 적합성 기준(제111조의2 관련)

1. 전자파 방사기준

가. 광대역 방사기준

구분		시험 주파수(㎒)		
		30 ~ 75	75 ~ 400	400 ~ 1000
자동차	10미터 기준치 (dBμV/m)	36	36+15.13log(f/75)	47
	3미터 기준치 (dBμV/m)	46	46+15.13log(f/75)	57
자동차의 전기·전자장치 단위부품		62−25.13log(f/30)	52+15.13log(f/75)	63

주) 1.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,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.

2.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,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·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.

나. 협대역 방사기준

구분		시험 주파수(㎒)		
		30 ~ 75	75 ~ 400	400 ~ 1000
자동차	10미터 기준치 (dBμV/m)	26	26+15.13log(f/75)	37
	3미터 기준치 (dBμV/m)	36	36+15.13log(f/75)	47
자동차의 전기·전자장치 단위부품		52−25.13log(f/30)	42+15.13log(f/75)	53

주)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·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㎑ 미만이거나, 76㎒~108㎒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dBμV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2. 전자파 내성기준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적용대상</th><th colspan="2">시험 조건</th><th rowspan="2">기준</th></tr>
<tr><th>주파수범위</th><th>전파의 세기(실효값)</th></tr>
<tr><td>자동차</td><td>20～2,000 ㎒</td><td>24 V/m</td><td rowspan="2">○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
○ 운전자, 승객 또는 다른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
○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
○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시스템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</td></tr>
<tr><td>자동차의 전기・전자 장치 단위부품</td><td>20～2,000 ㎒</td><td>가. 전자파방사: 30V/m
나. 150㎜스트립선로: 60V/m
다. 800㎜스트립선로: 15V/m
라. TEM cell: 75V/m
마. BCI(벌크전류인가): 60㎃</td></tr>
</table>

주) 1. 자동차의 전기・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.

2. 자동차 시험의 경우, 주파수 범위의 90%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/m 이며,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/m 이상이어야 한다.

3. 자동차의 전기・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, 주파수 범위의 90%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,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/m, 150mm 스트립라인은 50V/m, 800mm 스트립라인은 12.5V/m, TEM 셀은 62.5V/m 및 벌크전류인가(BCI)는 50mA 이상이어야 한다.